

제296회 정례회  
'10. 12. 7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3. 제안이유

○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명칭 변경

4. 주요골자

○ 재난관리과와 하천과의 통합으로 제4조제4호중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”으로, “민방위·민원개선과장”을 “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”으로 변경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○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 통합 및 변경된 업무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, 신·구조문 대비표 작성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

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

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 (현재)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안
제1조 ~ 제3조(생략)	제1조~제3조(현행과 같음)
제4조(구성및임무) .....	제4조(구성및임무) .....
<p>④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<u>재난관리과장</u>이 되며, 종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, 기반재난상황실의 장(이하 “재난상황실장”이라 한다)은 <u>민방위·민원개선과장</u>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</p>	<p>.....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.</p> <p>.....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.....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(검토)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 및 임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<u>재난관리과장</u> 이 되며, 종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, 기반재난상황실의 장(이하 “재난상황실장”이라 한다)은 <u>민방위·민원개선과장</u>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</p>	<p>제4조(구성 및 임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..... ..... .....<b>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</b>..... ..... .....<b>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</b>..... .....</p>